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4
----------	-----

제출년월일 : 2023. 1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야영장에 대해 카라반 신규 설치 등 운영 개선을 위한 이용 요금 현실화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야영장 이용료 일부 수정

- 1) 야영장 이용료 일부 수정
- 2) 초과인원에 대한 추가 금액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10. 27. ~ 2023. 11.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별표 야영장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창국민여가캠핑장(방림면 방림리)

유형	시설	규모	이용료 징구기준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
일반형	야영데크	5m×14m	1회/1일	70,000원	70,000원	50,000원
	야영데크	5m×8m	1회/1일	40,000원	40,000원	30,000원
	야영데크	4m×4m	1회/1일	35,000원	35,000원	30,000원

2. 꿈의대화캠핑장(대화면 대화리)

유형	시설	규모	이용료 징구기준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
일반형	야영데크	3m×6m	1회/1일	40,000원	40,000원	30,000원
고정식	황토방1		4인/1실	150,000원	150,000원	100,000원
	황토방2		4인/1실	120,000원	120,000원	80,000원
	글램핑		4인/1실	120,000원	120,000원	80,000원
	오두막집		4인/1실	80,000원	80,000원	50,000원
	돛형텐트		4인/1실	60,000원	60,000원	40,000원
유형	시설		이용료 징구 기준	주간+야간	야간	주간
편익시설	다목적무대		1일	200,000원	150,000원	100,000원

3. 계방산오토캠핑장(용평면 노동리)

유형	시설	규모	이용료 징구기준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
일반형	야영데크	5m×7m	1회/1일	40,000원	40,000원	30,000원
	야영데크	4m×4m	1회/1일	35,000원	35,000원	30,000원
	야영데크	3m×3m	1회/1일	30,000원	30,000원	25,000원
오토캠핑	오토캠핑장		1개소/1일	40,000원	35,000원	30,000원
카라반형	카라반(6인용)		1대/1일	180,000원	150,000원	120,000원
	카라반사이트		1개소/1일	50,000원	40,000원	35,000원
고정식	캐빈하우스		4인/1실	140,000원	140,000원	80,000원
	통나무집		4인/1실	120,000원	120,000원	70,000원
유형	시설	대상		이용료 징구기준		
편익시설	주차장	시설이용자 일반차량		1대 초과시	5,000원	
		시설이용자 카라반		1구획/1일	5,000원	

비고

1. “성수기”와 “주말”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예약 취소 등에 따른 환급·배상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II 중 제26호의 숙박업 기준을 적용한다.

가.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나. 주말 : 금요일 숙박,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前日) 숙박

2. “1일”의 시간 기준은 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이며, 퇴실시간을 초과할 때의 이용료 추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초과시간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추가 이용료	10,000원	20,000원	1일 이용료

3. 고정식 시설에 대하여는 **기준정원(4인)**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만 6세 이하는 제외) 10,000원을 추가한다.
4. 이용료의 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신분증 또는 서류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아영장 이용료 (제3조, 제4조 및 제6조 관련)							아영장 이용료 (제3조, 제4조 및 제6조 관련)						
1. 평창국민여가캠핑장(방림면 방림리)							1. 평창국민여가캠핑장(방림면 방림리)						
유형	시설	규모	이용료 장구기준	성수기	비수기		유형	시설	규모	이용료 장구기준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일반형	아영테크	5m×14m	1회/1일	70,000원	60,000원	50,000원	일반형	아영테크	5m×14m	1회/1일	70,000원	70,000원	50,000원
		5m×8m	1회/1일	40,000원	35,000원	25,000원			5m×8m	1회/1일	40,000원	40,000원	30,000원
		4m×8m	1회/1일	40,000원	35,000원	25,000원			삭제				
		4m×4m	1회/1일	35,000원	30,000원	25,000원			4m×4m	1회/1일	35,000원	35,000원	30,000원
2. 꿈의대화캠핑장(대화면 대화리)							2. 꿈의대화캠핑장(대화면 대화리)						
유형	시설	규모	이용료 장구기준	성수기	비수기		유형	시설	규모	이용료 장구기준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일반형	아영테크	3m×6m	1회/1일	40,000원	35,000원	25,000원	일반형	아영테크	3m×6m	1회/1일	40,000원	40,000원	30,000원
고정식		황도방1	4인/1실	150,000원	150,000원	100,000원	고정식		황도방1	4인/1실	150,000원	150,000원	100,000원
		황도방2	4인/1실	120,000원	120,000원	80,000원			황도방2	4인/1실	120,000원	120,000원	80,000원
		글램핑	4인/1실	120,000원	120,000원	80,000원			글램핑	4인/1실	120,000원	120,000원	80,000원
		오두막집	4인/1실	80,000원	80,000원	50,000원			오두막집	4인/1실	80,000원	80,000원	50,000원
		돛형텐트	4인/1실	60,000원	60,000원	40,000원			돛형텐트	4인/1실	60,000원	60,000원	40,000원
유형	시설	이용료 장구기준	주간+야간	야간	주간	유형	시설	이용료 장구기준	주간+야간	야간	주간		
편의시설	다목적무대	1일	200,000원	150,000원	100,000원	편의시설	다목적무대	1일	200,000원	150,000원	100,000원		
3. 계방산오토캠핑장(용평면 노동리)							3. 계방산오토캠핑장(용평면 노동리)						
유형	시설	규모	이용료 장구기준	성수기	비수기		유형	시설	규모	이용료 장구기준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일반형	아영테크	5m×7m	1회/1일	40,000원	35,000원	25,000원	일반형	아영테크	5m×7m	1회/1일	40,000원	40,000원	30,000원
		4m×4m	1회/1일	35,000원	30,000원	25,000원			4m×4m	1회/1일	35,000원	35,000원	30,000원
		3m×3m	1회/1일	30,000원	30,000원	25,000원			3m×3m	1회/1일	30,000원	30,000원	25,000원
오토캠핑	오토캠핑장	1개소/1일	40,000원	35,000원	25,000원	오토캠핑	오토캠핑장	1개소/1일	40,000원	35,000원	30,000원		
카라반형	카라반	카라반	1대/1일	120,000원	120,000원	110,000원	카라반형	카라반	카라반(6인용)	1대/1일	180,000원	150,000원	120,000원
		카라반사이트	1개소/1일	50,000원	40,000원	25,000원			카라반사이트	1개소/1일	50,000원	40,000원	35,000원
고정식	캐빈하우스	캐빈하우스	4인/1실	140,000원	120,000원	80,000원	고정식	캐빈하우스	캐빈하우스	4인/1실	140,000원	140,000원	80,000원
		통나무집	4인/1실	120,000원	100,000원	70,000원			통나무집	4인/1실	120,000원	120,000원	70,000원
유형	시설	대상	이용료 장구기준										
편의시설	주차장	시설이용자 일반차량	1대 초과시 5,000원										
		시설이용자 카라반	1구획/1일 5,000원										
편의시설	주차장	시설이용자 일반차량	1대 초과시 5,000원										
		시설이용자 카라반	1구획/1일 5,0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아영장 이용료 (제3조, 제4조 및 제6조 관련)</p>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수기”와 “주말”의 기준과 예약 취소 등에 따른 환급·배상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II 중 제26호의 숙박업 기준을 적용한다. <li style="padding-left: 20px;">가. 성수기 : 여름시즌 7.15. ~ 8.24., 겨울시즌 12.20. ~ 2.20. <li style="padding-left: 20px;">나. 주말 : 금요일 숙박,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前日) 숙박 2. “1일”의 시간 기준은 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이며, 퇴실시간을 초과할 때의 이용료 추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초과시간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시간 이상 2시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시간 이상 4시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시간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추가 이용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일 이용료</td> </tr>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고정식 시설에 대하여는 기준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13세 이하는 제외) 5,000원을 추가한다. 4. 이용료의 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신분증 또는 서류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초과시간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추가 이용료	10,000원	20,000원	1일 이용료	<p>[별표]</p>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수기”와 “주말”의 기준과 예약 취소 등에 따른 환급·배상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II 중 제26호의 숙박업 기준을 적용한다. <li style="padding-left: 20px;">가. 성수기 : 여름시즌 7.15. ~ 8.24., 겨울시즌 12.20. ~ 2.20. <li style="padding-left: 20px;">나. 주말 : 금요일 숙박,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前日) 숙박 2. “1일”의 시간 기준은 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이며, 퇴실시간을 초과할 때의 이용료 추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초과시간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시간 이상 2시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시간 이상 4시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시간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추가 이용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일 이용료</td> </tr>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고정식 시설에 대하여는 기준정원(4인)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만 6세 이하는 제외) 10,000원을 추가한다. 4. 이용료의 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신분증 또는 서류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초과시간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추가 이용료	10,000원	20,000원	1일 이용료
초과시간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추가 이용료	10,000원	20,000원	1일 이용료														
초과시간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추가 이용료	10,000원	20,000원	1일 이용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연락처	(033) 330 - 2250